

별지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가. 편의제공 대상

- 신규직원 채용 응시자 중 응시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나.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장애인·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
 - (신청)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신청
*[붙임1]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사지원서 내 ‘첨부서류’ 업로드
 - (증빙) 필기시험·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결과)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

다. 유의사항

- [붙임2]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장애유형·정도 등 및 편의제공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
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인정 불가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반드시 확인 후 발급)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

○ [별지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숙지하신 후,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1. 인적사항

지원분야(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장애유형

2. 편의제공 신청 내용

편의제공 전형	신청 (✓ 표시)	편의제공 내용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재)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붙임2]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편의제공이 필요한 전형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전형 단계	장애 유형		편의제공 내용
필기시험	지체 장애	상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하지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뇌병변장애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각장애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청각장애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시험	지체 장애	상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확대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면접장 내 이동 지원
	뇌병변 장애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확대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면접장 내 이동 지원
	시각 장애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확대 제공 ·관련서식 및 면접문제지 축소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 장애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인공와우 등) ·관련서식 및 안내사항 서면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위 명시되지 않은 기타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지원 예정